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기숙사 입사생들의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해소 및 타 시군 학생들을 적극 유인하여 우리군 인구유입에 도움을 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신설함(안 제2조제7호)

-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규제심사 : 원안동의(2017.10.11. 기획감사실-12176호)
- 2) 성별영향분석 : 원안동의(2017.10.17. 주민생활지원과-60340호)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(2017.11.01. 기획감사실-13446호) 반영
- 4) 입법예고(2017.10.19.~11.08.)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 제6항”을 “제11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

제7조제4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11조제8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④ -----
----- 한 차례만 연임-----

-----.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~ ⑦ (생략)

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⑨ ~ ⑩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2.28.>
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8.9.17., 2000.12.27., 2007.12.28.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- 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 - 2210